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9. 3.(금) 10:00

제230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제환경국 소관)



복 지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135호
- 나. 제 출 자 : 윤영희 의원
- 다. 제출일자 : 2021. 8. 24.
- 라. 회부일자 : 2021. 8. 24.

2. 제안이유

금천구 내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지역사회 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나.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다.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9조)
- 라.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1조
 - 「자원순환 기본법」 제26조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 다. 입법예고 : 2021. 8. 24. ~ 8. 30.

5. 검토의견

가. 조례안 제정 이유

본 조례안은 최근 아이스팩 생산·유통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아이스팩의 수거·재사용 등을 통해 환경 보전과 자원순환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의원발의 되었으며 총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나. 주요 내용

- 1)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자원 순환 및 생태계 오염 방지를 위한 친환경 원칙을 규정함
- 2)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3)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9조)
시책의 수립, 실태조사, 사업 지원을 통하여 실효성 및 시행효과가 나타나도록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
- 4)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다. 검토의견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자원순환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자원의 재활용과 자원순환발전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상위법령의 근거에 따라 아이스팩의 수거 및 재사용 등으로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47호, 2021. 1. 5., 일부개정]

제2조(정의) 1. 삭제 <2017. 11. 28.>

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廢熱)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부산물”이란 제품의 제조·가공·수리·판매나 에너지의 공급 또는 토목·건축공사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건을 말한다.

4. “지정부산물”이란 부산물 중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특히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을 말한다.

5.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6.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재생이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8.~11. 생략

12.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제31조(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에게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차관(借款)을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2013. 5. 22., 2014. 1. 21., 2017. 11. 28.>

1. 재활용시설의 설치 사업

2. 재활용지정사업자,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자원재활용사업

3. 제25조의3에 따른 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운영

4. 제34조에 따른 재활용단지 조성 사업

5.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폐기물 처리
6. 자원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7. 유통지원센터의 설립·운영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 외에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제26조(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순환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원순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2. 자원순환사회에 관한 연구·기술개발 사업
3. 자원순환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4. 순환자원을 사용하는 사업자의 순환이용 사업
5. 폐지·고철 등을 수집·운반하는 자와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의 수집 환경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자원순환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